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내란·외환죄 구속 피의자의 보석 제한 등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2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 검토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2.
3. 회 부 일 : 2025.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6조의2(보석의 제한) 법원은 제95조와 제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2. 개정안 검토

가. 피고인 보석 제도 개관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영장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규정함.¹⁾

- 1)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는 보증금 예치 등의 조건을 통해 피고인의 공판절차 및 형집행 출석을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 확보라는 구속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서, 무죄추정 원리에서 유래하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²⁾

「형사소송법」 제98조³⁾는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나. 피고인 구속제도 개선 논의 및 해외 입법례

피고인 구속과 관련하여서는 i)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⁵⁾ ii) 구속과 보석 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구속영장 발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례 참고

3)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4) 법률 제84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제정·개정이유서 참조

5)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는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6.

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보석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⁶⁾, 구속적 부심 청구, 보석청구, 구속 취소 청구, 구속집행정지신청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피구속자에 대한 석방심사제도를 일원화하자는 의견⁷⁾ 등이 있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⁸⁾ 미국의 경우 연방형사소송규정(18 U.S.C.)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법관 앞에 출석하면, 법관은 공판 전에 해당자에게 출석서약부 석방, 조건부 석방, 구금 등을 결정하며, 재판 중 구속기간도 제한이 없고, 석방 시 부과조건을 위반하면 석방취소, 구금명령 및 법정 모욕죄 기소대상이 됨.⁹⁾

독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장기구속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의안번호 제173759호)에 담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①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장기인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도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 ② 조건부 석방결정과 관련하여 전관예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보증금 등 납부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6) 최병천,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 형사법연구 제36권제2호, 288쪽

7) 박정난,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제1호, 2024, 92쪽 이하 참조

8) 법원행정처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등 참조

9) **미국 형사소송절차규정(18 U.S.C.)**

제3141조 일반적 석방 및 구금 권한

(a) 공판 전 - 이 편 제3041조에 따라 체포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 법관은, 체포된 사람이 법관 앞에 섰을 때, 이 장에 따라 공판 전에 해당자의 석방 또는 구금을 명령한다.

(b) 선고 또는 상소 전 - 범죄에 대한 제1심 관할 법원 법관 또는 연방 상소심 법원 법관은 형 선고 또는 집행 전, 또는 유죄 판결 또는 양형에 대한 상소 전에 해당자의 석방 또는 구금을 명령한다.

제3142조 공판 전 피고 석방 또는 구금

(a) 일반 -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법관 앞에 출석하면, 법관은 공판 전에 해당자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한다.

(1) 이 조 제(b)항에 따른 출석 서약 또는 무담보 출석 보증을 바탕으로 한 석방

(2) 이 조 제(c)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

(3) 이 조 제(d)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취소, 추방 또는 입국 금지를 위한 일시구금

(4) 이 조 제(e)항에 따른 구금

제3148조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a) 가능한 제재 - 이 편 제3142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석방 취소, 구금 명령 및 법정모욕죄 기소 대상이 된다.

구속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사안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에 비추어 구속 계속이 비례성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속취소된 피고인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음.¹⁰⁾

일본의 경우, 구류기간을 공소 제기가 있는 날부터 2개월로 하면서, 피고인이 사형·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주거불명 등에는 횟수 제한 없이 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전제에서, 구속기간 만료 시 별도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음.¹¹⁾

참고로,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49호, 2024. 12. 3.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10) 독일 형사소송법

제120조(구속영장의 취소) ①구속을 위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의 계속이 사안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히피고인이 무죄석방되거나, 공판절차의 개시가 기각되거나 또는 절차가 단지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2조a(1년 이상의 구속) 제1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구속이 제112조a의 구금사유에 근거한 때에는 그 집행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11)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②구류기간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2개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1개월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제89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은 1회에 한한다.

제89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때
3.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때
4.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6. 피고인의 성명 또는 주거가 불명한 때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내란·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제한하여, 피고인이 석방되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추가적인 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해 보석의 길을 전면적으로 막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 확보라는 공익 간 비교형량이 필요함.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보석허가 여부는 사안의 경중,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법률에서 전면 금지할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63